

# 치매보험금 지급조건 안내

아래의 조건이 모두 해당되어야 치매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구분	주요내용
치매상태의 정의	‘치매상태’라 함은 피보험자가 <b>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</b> 으로 인하여 <b>치매보장개시일</b> 이후에 중증 또는 중등도 또는 경도의 <b>인지기능의 장애</b> 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.
치매 보장개시일	치매 보장개시일은 <b>계약일(부활(효력회복) 일)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(또는 2년)이 지난날의 다음날로</b> 합니다. 다만 <b>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</b>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<b>계약일 또는 부활(효력회복)일부터</b> 보장합니다.
①-1 중증 인지장애	‘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’란 CDR척도(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, 2001년) 검사결과가 <b>3점 이상</b> (단,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 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‘치매 보장개시일’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<b>90일 이상 계속되어</b>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.
①-2 중등도 인지장애	‘중등도의 인지기능의 장애’란 CDR척도(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, 2001년) 검사결과가 <b>2점</b> (단,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 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‘치매 보장개시일’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<b>90일 이상 계속되어</b>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.
①-3 경도 인지장애	‘경도의 인지기능의 장애’란 CDR척도(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, 2001년) 검사결과가 <b>1점</b> (단,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 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‘치매 보장개시일’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<b>90일 이상 계속되어</b>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.
치매의 진단조건	치매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(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)의 진단서에 의하고, 이 진단은 병력청취,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,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, 신경심리검사, 일상생활능력평가, 검사실검사, 뇌영상검사 등 <b>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 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,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.</b> 그 진단 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피보험자의 치매 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최종 진단 확정됩니다. <b>회사는 치매 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</b>
※ 보상하지 않는 치매	“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” 및 “알코올중독”, “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”는 <b>보장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</b>

※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# ■ 경증 이상 치매의 보장개시 및 진단확정(예시)



단, 재해로 인한 뇌손상은 계약체결일부터 보상

※ 치매보험의 대표적인 담보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상품, 담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